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강화>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58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 강화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장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9.

다. 회 부 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빅테크의 상당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서비스 수익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회피 및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 제34조의2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가 주로 통계 데이터를 통한 단순 현황 파악 용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항목과 대상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합리적인 현황 파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구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 강화

국내에서 큰 수익을 올리는 글로벌 빅테크의 재무 정보 비공개와 해외 수익 이전으로 조세 회피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는 통계 위주의 형식적 조사에 그쳐 실효성이 낮음.

이에 국내 서비스 제공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구조와 매출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② (생략) <u><신설></u>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명칭, 주된 사무</u>

③ (생 략)	<u>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u> <u>2.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u> <u>및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u> <u>3.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u> <u>내역, 이용자 수, 거래 건수,</u> <u>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u> <u>공 현황</u> <u>4.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u> <u>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u> <u>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

□ 검토사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¹⁾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1)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개정안은 국내 서비스 제공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 구조와 매출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해외 부가통신사업자 중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구조와 매출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조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실태조사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도 예상되며,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책 수립과 규제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어 그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존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가능과 입법실의 검토 필요

-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동 개정안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업 구조와 매출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실태조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 조항에 근거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

2제2항2)에 따르면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과 제공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및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실태를 포함하여 사업 구조와 매출 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함. 또한 같은 법 같은 조 제8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도 동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동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사항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규율 강화의 효과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입법적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동 개정안이 확보하고자 하는 해외 대규모 사업자의 국내 매출액 등 자료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매출에 포함되는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8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②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상호·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일반 현황
2.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
3. 종사자 수, 채용예정자 수 등 인력 현황 및 수요
4.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신기술 활용계획 등 연구개발·보유기술 현황
5. 제공 서비스 내역, 서비스 이용자 수, 거래 건수, 거래액 등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현황
6.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집하는 데이터의 유형,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형태 등 데이터 보호 및 이용 현황
7. 시장점유율, 기업 인수 합병 현황 등 부가통신서비스 경쟁 현황
8.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경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정확한 자료 파악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료 제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의 하위 법령 위임 필요

- 안 제34조의2제4항(현행 제34조의2제3항³⁾)에 동 개정안에서 추가된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제출 대상 서류의 범위, 제출 방식 및 구체적인 제출 시기(예: 매년 3월 말 등) 등 세부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료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제3항(동 개정안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련된 세부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음.
- 동 개정안에 대한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3)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동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별 사업자의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동 법의 목적과 실태조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조사로 불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또한,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세법 개정이나 디지털세 도입 등 보다 직접적인 정책 수단이 이미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적인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할 경우 중복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종합하면, 동 개정안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국내 사업구조 및 매출액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권한을 구체화함으로써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음. 다만, 현행 법령에 따라서도 실태조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자료 제출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225